

February 17, 2014

북한 주민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 제척 기간의 예외 인정 여부

1. 북한 주민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논의 및 특례법의 제정

우리법상 북한 주민의 법률적 지위는 남북이 서로 분단되어 있는 현실로 인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분쟁'은 최근 남북교류와 탈북자의 국내입국의 지속적 증가¹에 따라 증가세를 보여 왔습니다.

우리 법원은 1982. 12. 28. '현재 상속인이 북한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북한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상속에 대한 상속인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으나(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판결), 2004. 5. 20. '상속재산 분할 당시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 도저히 상속인을 확정할 방법이 없고, 그 결과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해지므로, 북한에 가족이 있더라도 그 생사가 불분명하고 그 가족의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남한에 있는 가족들이라도 먼저 상속재산을 나눠질 수 있는 것'이라고 다소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판시를 하는 등(서울가정법원 2004. 5. 20. 선고 98느합1969판결²) 명확하지 못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분단 현실과 원칙에 따른 법률의 해석 사이의 괴리 속에서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비롯된 것인데, 국회에서는 2012. 2. 10.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을 북한 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민법의 특례규정으로서 제정·공포하여 이러한 분쟁에 대한 법률적 해결을 시도하였으며, 특례법은 2012. 5. 11.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례법 시행 이후인 2013. 7. 25.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남한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³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유산상속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북한 주민에게 남한 주민과 동일한 권리가 인정됨을 확인하였는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므3105판결), 이러한 법 제정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친족·상속법상의 권리 행사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1.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8년 말에는 306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 이후 해마다 1,000명 이상 입국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결과, 2010년에는 그 수가 2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2. 위 판결의 당사자들은 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이후 항고심 과정에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개인소유권이 인정되는데³, 북한에서도 1948년도 헌법 제8조 제1항에서 “개인 소유에 대한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을 두어 상속 제도를 인정한 이래, 1982. 12. 7.자 민사규정(잠정) 제5장 가족법 편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제46조 내지 제53조까지의 7개 조문을 규정하였으며, 2002. 3. 13.에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2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이하 ‘상속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북한은 위 「상속법」에서 처음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 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소기간은 “상속권 침해를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입니다(「상속법」 제14조).

2.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관한 최근 판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원은 2014. 1. 21. 탈북자인 원고가 제기한 국내 상속회복청구 사건에 관하여 특례법을 근거로 북한 주민의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민법상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여전히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 동 판결이 향후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를 통해, ① 특례법은 우리나라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침해행위가 있을 때로부터 10년”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북한 주민인 상속인의 상속권은 사실상 박탈된다는 점을 고려해 제정된 것으로 보이고, ② 분단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진정상속인인 북한 주민으로서 자신의 침해된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한 구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③ 북한 주민에 대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 적용을 배제시키더라도 이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재산권 박탈’ 등 헌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탈북자인 원고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의 제한 없이 동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판결의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위 판결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 그동안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던 탈북 주민들의 유사 소송이 활발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위 판결과 같이 북한 주민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용에 예외를 인정할 경우 북한 주민이 상속인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관계는 확정되지 못한 채 계속적인 분쟁의 대상으로 남게 되고, 침해일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제소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북한 「상속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판시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바,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

3. 1948년도 북한헌법에서는 일부 생산수단(제5조 제1항) 및 5정보 또는 20정보의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를 인정하였고(제6조 제4항), 그 외에도 “법령에 규정한 토지, 축력, 농구, 기타 생산수단, 중소산업, 기업소, 중소상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과 그 부속 시설, 가정용품, 수입, 저금에 대한 개인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라고 규정하여(제8조 제1항),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참고로 위 상속법 제13조에서는, ① 노동에 의한 분배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② 국가 또는 사회의 추가적 혜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③ 개인부업경영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④ 살림집, 도서, 화폐, 저금,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운전기재, ⑤ 각종 재산상 청구권과 채무, ⑥ 그 밖에 다른 공민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같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상속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 전문팀]

- | | | |
|--------------|------------------|----------------------------|
| ● 조용준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89 | E-Mail. yjncho@shinkim.com |
| ● 이수현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04 | E-Mail. leesh@shinkim.com |
| ● 윤영훈 변호사 | TEL. 02 316 1696 | E-Mail. yhyun@shinkim.com |

[자산관리 (상속, 신탁 등) 전문팀]

- | | | |
|--------------|------------------|----------------------------|
| ● 이흥철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34 | E-Mail. hclee@shinkim.com |
| ●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46 | E-Mail. hjikim@shinkim.com |
-